

# 서 면 질 문 서

질 문 의원명	이 민 석 의원	소 속	행정건설위원회
질 문 대상자	마포구청장		

## <질문 내용>

지난 6월 25일 딜라이브 뉴스에 보도에서 문제제기된 내용과, 6월 26일 제231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으로써 지적한 제로페이 관련 조례 개정의 과정과 공포 후 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제로페이의 결제대금 세외수입 처리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한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를 잠정 보류하도록 각 자치구에 4월5일 업무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시킨 이유
2. 4월 25일 제로페이 감면 개정 조례 공포 후 서울시와 마포구가 서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하자,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5월 30일 정상택 부구청장의 주재로 진행한 제로페이 업무회의에서 마포구 자체적으로 방침을 6월 5일 수립하여 잠정 보류했던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를 재개하였는데, 7월 현재까지도 원활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우리구 방침이 공정하고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요청함

# 서면질문 답변서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질문의원(위원회)	이민석 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질문요지	제로페이 관련 조례 개정 과정과 공포 후 업무 추진 내용

**【 세부질문 내용 】**

- 1) 제로페이 결제대금 세외수입 처리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한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에서 잠정 보류 요청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시킨 이유
- 2) 서울시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마포구 자체적으로 6월 5일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7월 현재까지 원활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방침이 공정하고 적법하였는지 여부

## ■ 세부질문에 대한 답변서

먼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로페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1) 제로페이 결제대금 세외수입 처리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한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에서 잠정 보류 요청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시킨 이유

⇒ 서울특별시 2019. 4. 5.자 협조요청 사항은 모든 시설의 결제를 보류하라는 것이 아닌 구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였으며, 제로페이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2) 서울시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마포구 자체적으로 6월 5일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7월 현재까지 원활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방침이 공정하고 적법하였는지 여부

⇒ 초기의 기존 결제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현재는 원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처리 방침은 선취수수료를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법률적 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진하였습니다.